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가능성 표시 제한 규제』

2026. 4. 8.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액 (천불)	101,367,246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제343호(SB 343)」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관련 표시 기준 강화 및 허위·오인 표시 제한
- (적용범위) 전 제품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재 중 재활용 관련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뿐 아니라 비플라스틱 제품·포장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도 포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 충족 시에만 재활용 표시 허용
 - * 본 법안에 명시된 재활용 시스템 요건 및 설계 및 물질 요건
 - 기준 미충족 시 ‘recyclable’ 문구, 추적 화살표 기호 등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시 사용 시 기만·오해 소지 표시로 간주
 - PFAS 등 물질 요건 및 기록보관 의무 부과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연방은 가이드라인 중심, 일부 주는 표시 제한 강화
 - (중국)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강화
 - (일본) 재질 표시 및 자원순환 설계 의무 강화
 - (EU) 포장재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구 강화
 - (인도) EPR 기반의 포장재 관리 및 표시·라벨링 요구 강화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가 실제 재활용 인프라 기준과 연계되어 포장 설계·라벨링·마케팅 및 공급망 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권고사항)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CalRecycle 물질 특성 조사 및 업데이트 자료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라벨링 부담) 재활용 문구·기호 삭제 또는 변경, 수지 식별 코드 표시 방식 조정 필요
- (시험비용 부담 증가) PFAS 등 물질 검증 및 재활용 가능성 입증자료 관리 부담 발생 가능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보수적 라벨링 적용 및 캘리포니아 판매분 표시 점검 우선
 - (중견기업) 공급망 검증 및 북미 대상 제품 포장 기준 정비
 - (대기업)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성 기준 내재화 및 내부 가이드라인 운영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3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3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5
I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7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7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8
V. 대응 방안	19
참고 1 참고자료	20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1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Act on Environmental Labeling of Plastic Products, Senate Bill 567 Enacted, 2011 and Others - Amendment - (on false recyclability claims) Senate Bill 343 Enacted, 2021	
	국문	플라스틱 제품 환경 라벨링에 관한 법률, 상원 법안 567호 제정(2011년) 및 기타 - 수정안 - (허위 재활용 가능성 표시에 관한) 상원 법안 343호 제정(2021년)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미국
채택(예정)일	2021.10.05.	시행현황	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10.04. (적용 예정일)	통보일 (고시일)	2021.10.05.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709,033,00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101,367,246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주 의회 ▪ California Legislature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관련 허위·오인 표시 방지, 사용 종료 시 적절한 처리 방법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소비자 대상 제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포장재에 대해 'recyclable' 문구,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화살표 기호 등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설계·물질 요건 및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실제 재활용 인프라 및 설계·물질 요건과 연동되어 있어 포장 설계, 라벨링, 공급망 검증 및 기록관리 부담 가능성 존재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 제한, 포장 설계 변경, 금형 수정 부담, PFAS 및 재활용 저해 요소 검증 부담, 지역별 패키징 운영 부담 가능성 존재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의 사전 점검, 기준 충족 소재 적용, 공급망 자료 확보, 캘리포니아 판매 제품 전용 라벨·포장 전략 검토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美 캘리포니아주는 재활용 가능성 관련 허위·오인 표시를 방지하고, 사용 종료 시 처리 방법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법률 개정
 - 2021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 343* 승인을 통해 「사업 및 직업법」¹⁾과 「공공자원법」²⁾ 개정
 - *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제343호(Senate Bill No. 343)」
 -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를 반영하도록 표시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

□ 규제 요지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표시* 규제 도입
 - * 'recyclable' 문구,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화살표 기호 및 그 밖의 재활용 가능성 표시 또는 재활용 지시 기호·문구
 - 캘리포니아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 충족 시에만 해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아래 표의 두 요건으로 구성됨
- 재활용성 기준 (재활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요건	내용
재활용 시스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포장재를 구성하는 재질 및 형태가 캘리포니아주 인구 60% 이상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되어야 함 - 주 전체 재활용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분류 및 선별되어야 함 - 실제 재활용을 통해 신규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활용되어야 함
설계 및 물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포장재는 APR Design® Guide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모든 제품·포장재는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성요소(잉크, 접착제, 라벨 등)를 포함해서는 안 됨 - 의도적으로 첨가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됨 -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유기불소가 100ppm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함

1)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 California Public Resources Code

-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를 사용할 경우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로 간주됨
-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에 수지 식별 코드*는 필수이며, 추적 화살표 기호까지 표시하려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수지 식별 코드(Resin Identification Code):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수지(樹脂) 종류의 구분을 위해 숫자(1~7) 및 약어(PET, HDPE 등)로 표시하는 코드

□ 적용대상

- (HS 코드: 해당 없음) 전 제품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재 중 재활용 관련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 시행일

- 본 규제는 2026년 10월 4일 이후 제조된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됨
 - 본 법안은 2021년 10월 5일 승인·제정됨
 - 재활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물질 특성 조사* 공표일과 2024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18개월의 유예 후 적용됨**
 - *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시스템에서 실제로 수거, 선별, 재활용되는 재질 및 형태별 현황을 분석하여, 재활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CalRecycle이 수행·공표하는 조사
 - ** 공공자원법 제42355.51조에 따름
 - 물질 특성 조사는 2025년 4월 4일 공표됨

2

규제 세부 내용

□ 규정 비교표 (본 내용은 2021년도에 개정된 사항에 해당)

개정 전	개정 후
[사업 및 직업법 개정]	
<p>제17580조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가 자연환경에 해롭지 않거나 유익하다고 재활용을 지시하는 특정 환경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라벨, 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다음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기록·보관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표시의 진실성에 대한 근거 · 소비재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불리한 환경영향 · 소비재의 생산, 유통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소비재의 생산 또는 유통과 직접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허가 위반 사항 · 해당되는 경우, "recycled", "recyclable", "biodegradable", "photodegradable" 또는 "ozone friendly" 용어 사용과 관련한 연방 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 가이드라인의 통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p>제17580조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가 자연환경에 해롭지 않거나 유익하다고 특정 환경 용어를 사용하거나, <u>추적 화살표 기호 등 재활용을 지시하는 표시를 사용하여</u> 광고, 라벨, 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다음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기록·보관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표시의 진실성에 대한 근거 · 소비재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불리한 환경영향 · 소비재의 생산, 유통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소비재의 생산 또는 유통과 직접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허가 위반 사항 · 해당되는 경우, "recycled", "recyclable", "biodegradable", "photodegradable" 또는 "ozone friendly" 용어 사용과 관련한 연방 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 가이드라인의 통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해당 자가 "recycl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u>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소비재가 공공 자원법 제42355.51조 (d)항에 따른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u>
(신설)	<p>제17580조 예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재활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표시 (환경 마케팅 주장)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신설 (아래: 예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추적 화살표 기호 표시 의무가 있는 제품 · 음료용기 재활용 프로그램 대상 제품 · 특정 화수 프로그램 대상 제품의 적정 폐기 안내 ·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퇴비화 또는 적정 폐기 안내

개정 전	개정 후
<p>제17580.5조</p> <p>- 허위기만적 환경마케팅 주장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C 환경 마케팅 가이드 부합 시 일반적으로 항변 가능 	<p>제17580.5조</p> <p>- 허위기만적 환경마케팅 주장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C 환경 마케팅 가이드 부합 시 일반적으로 항변 가능 · 다음 위반 시 항변 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자원법 제18015조(d) 2) 공공자원법 제42355.51조(b)(1)

[공공자원법 개정]

<p>제18015조</p> <p>(a)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는 그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에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라벨 및 바닥 컵(basecup)이 서로 다른 재질로 된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그 기본 재질에 따라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그 코드는 삼각형 내부에 배치된 숫자와 삼각형 아래에 배치된 문자로 구성되어야 함.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PETE (polyethylene terephthalate) 2 =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3 = V (vinyl) 4 =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5 = PP (polypropylene) 6 = PS (polystyrene) 7 = OTHER (includes multilayer) <p>(b) 병 또는 용기가 그 수지의 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수지 약호 아래에 "7"이 표시되어야 함</p> <p>(c) 자원재활용복구부의 재활용국은 (a)항에 따라 라벨에 사용되는 약호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p>	<p>제18015조</p> <p>(a)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는 그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에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라벨 및 바닥 컵(basecup)이 서로 다른 재질로 된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그 기본 재질에 따라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그 코드는 삼각형 내부에 배치된 숫자와 삼각형 아래에 배치된 문자로 구성되어야 함.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PETE (polyethylene terephthalate) 2 =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3 = V (vinyl) 4 =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5 = PP (polypropylene) 6 = PS (polystyrene) 7 = OTHER (includes multilayer) <p>(b) 병 또는 용기가 그 수지의 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수지 약호 아래에 "7"이 표시되어야 함</p> <p>(c) 자원재활용복구부의 재활용국은 (a)항에 따라 라벨에 사용되는 약호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p> <p>(d) (a)에 따라 요구되는 수지 식별 코드는 해당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제42355.51조 (d)항에 규정된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f)항에 정의된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배치되어서는 안 됨</p>
---	--

개정 전	개정 후
<p>제42355.5조</p> <p>-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마케팅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인정된 기준을 따라야 함</p>	<p>제42355.5조</p> <p>-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마케팅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인정된 기준을 따라야 함</p> <p>- <u>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관련 주장은 실제 운용상 진실하고 정확해야 함</u></p> <p>- <u>사용 종료 시 소비자에게 적절한 처리 방법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u></p>
<p>제42355.51조 (a)</p> <p>(신설)</p>	<p>제42355.51조 (a)</p> <p>-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포장재를 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하여서는 안 됨</p>
<p>제42355.51조 (b)</p> <p>(신설)</p>	<p>제42355.51조 (b)</p> <p>(1) (2)를 전제로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밖의 기호나 문구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제품 또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제품 또는 포장재는,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d)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가 아닌 한,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간주됨</p> <p>(2) (1)은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음</p> <p>(A) (d)(1)(B)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의 물질 특성 조사를 부서가 게시한 날로부터 18개월까지, 또는 2024년 1월 1일까지 중 더 늦은 날까지 제조된 모든 제품 또는 포장재</p> <p>(B) (d)(1)(B)에 따라 부서가 물질 특성조사를 갱신한 날로부터 18개월까지 제조된 모든 제품 또는 포장재로서, 갱신된 조사 게시 이전에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가, 또는 신규 제품 또는 포장재의 경우 게시 이전이었다면 (d)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하였을 것이었던 경우</p>

개정 전	개정 후
	<p>(3) (2)를 전제로, (d)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이 모두 적용됨</p> <p>(A) 제품 자체에 직접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그 제품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밖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p> <p>(B) 제품 또는 포장재가 둘 이상의 재질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구는, (d)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포장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문구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다른 구성요소 중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같은 글꼴 같거나 더 큰 글자 크기, 또는 같거나 더 큰 기호 크기로 명확히 하여야 함</p> <p>(C) 소비 가능한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에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밖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포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됨</p>
<p>제42355.51조 (c) (신설)</p>	<p>제42355.51조 (c)</p> <p>- 다음 중 어느 것도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p> <p>(1) 해당 물품이 재활용 가능하지 않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추적 화살표 기호 위에 45도 각도로 놓인 명확히 보이는 선을 함께 사용하여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p> <p>(2)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추적 화살표 기호를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소비재</p> <p>(3)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재를 퇴비화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시하는 것</p> <p>(4) 팍 찬 정삼각형(solid equilateral triangle) 내부에 배치된 수지 식별 코드</p>

개정 전	개정 후
<p>제42355.51조 (d) (신설)</p>	<p>제42355.51조 (d)</p> <p>(1) 부서는 2024년 1월 1일까지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및 물질 특성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p> <p>(2) (3)을 전제로, 제품 또는 포장재는 부서가 (1)(B)에 따라 공표한 정보를 기초로 판단할 때,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질 및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p> <p>(A) 해당 재질은 캘리포니아 내 여러 지역의 재활용 수거 시스템에서 실제로 수거되고 있어야 하며, 그 수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모두 합쳤을 때 그 지역의 인구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어야 함</p> <p>(B) 해당 재질은 주 전체 재활용 프로그램의 최소 60%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용량 이송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물질 흐름으로 선별되어야 하며, 그 선별된 물질은 바젤협약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시설로 이송되어 실제로 재활용되어야 함</p> <p>(3) 제품 또는 포장재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p> <p>(A) 플라스틱 포장재는 APR Design® Guide에 따라 판단할 때, 재활용 공정에서 선별·세척·재처리를 방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또는 라벨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p> <p>(B) 플라스틱 제품 및 비플라스틱 제품포장재는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공정에서 선별·세척·재처리를 방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또는 라벨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p> <p>(C) 관련 규정에 따라 식별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p>

개정 전	개정 후
	<p>(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FAS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또는 섬유로 제조되지 않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 · 총유기불소 기준 100ppm 이상 존재하는 PFAS <p>(4) (2) 및 (3)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포장재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최소 75% 이상의 입증된 재활용률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p> <p>*이 경우 재활용률은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가 선별집적된 이후 최소 75% 이상이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로 재처리되는 비율을 의미함</p> <p>(5)</p> <p>(A) 2030년 1월 1일 이전에는 연석 수거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재라 하더라도, 비연석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최소 60% 이상이 회수되고, 해당 물질이 재활용을 위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사용 종료 후 적절한 이송 시설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운송되어 재질 및 형태별로 선별집적될 수 있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p> <p>(B)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회수율 기준이 최소 75%로 적용됨</p> <p>(6) (2) 및 (3)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포장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수립된 재활용 또는 폐기 관련 별도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고, 국장이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가 연석 수거 재활용의 오염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p> <p>(7) 부서가 (1)에 따라 공표한 정보는 자치체가 특정 재질 또는 형태를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수용할지 여부 및 그 수용 범위를 결정할 재량을 제한하지 않음</p>

개정 전	개정 후
<p>제42355.51조 (e) (신설)</p>	<p>제42355.51조 (e) - 본 조에서 “추적 화살표 기호”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f)항에 따른 의미를 가짐</p>
<p>제42355.51조 (f) (신설)</p>	<p>제42355.51조 (f) - 본 조에서 “recycling”, “recyclable” 및 “recyclability”에는 transformation, EMSW conversion 또는 연료 생산은 포함되지 않음</p>

□ 본 법안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포장재 중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표시가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주체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 등 재활용 표시를 사용하는 사업자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관련 허위·오인 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사용 종료 시 적절한 처리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핵심 규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가능성 관련 표시를 허용하는 기준을 법률상 명확히 설정 - 기준 미충족 시 다음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추적 화살표 기호(chasing arrows symbol) · 'recyclable' 문구 · 기타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시
재활용 가능성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포장재가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statewide recyclability criteria)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재질·형태가 주 인구의 최소 60%를 포괄하는 관할구역의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수거되고, 주 전체 재활용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용량 이송시설 또는 처리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을 위한 별도 흐름으로 선별되어야 함 - 또한 해당 재질·형태는 바젤협약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시설로 이송되어 실제로 재활용되고,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활용되어야 함
표시 제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표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 · 'recyclable' 등 재활용 관련 용어 · 추적 화살표 기호(chasing arrows symbol) ·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화살표 기호 · 그 밖에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소비자에게 재활용을 지시하는 기호·문구
수지 식별 코드(RIC)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의 수지 식별 코드(1~7)는 기존처럼 표시 의무가 있으나, 해당 제품이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표시할 수 없음 - 단색 정삼각형(solid equilateral triangle) 내부의 수지 식별 코드는 예외로 인정됨

구성	주요 내용
설계 및 물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포장재는 APR Design® Guide를 기준으로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라벨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플라스틱 제품 및 비플라스틱 제품·포장재도 재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또는 라벨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의도적으로 첨가된 특정 화학물질이 없어야 하며,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되었거나 총유기불소 기준 100ppm 이상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록보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yclable' 용어,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기타 재활용 관련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문서를 서면으로 보관해야 함 - 여기에는 해당 소비재가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포함됨 - 관련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함
예외 및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추적 화살표 기호 표시가 의무인 제품, 음료용기 재활용 프로그램 적용 제품,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퇴비화 또는 적정 폐기 안내 등은 일정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됨 - 75% 이상의 실증 재활용률이 입증된 경우 예외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비자 직접 반납형 수거 프로그램(non-curbside collection program)도 2030년 1월 1일 전에는 60%, 그 이후에는 75%의 회수율 기준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수립된 별도 재활용 또는 폐기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고, 국장이 연석 재활용의 오염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색 정삼각형(solid equilateral triangle) 내부에 표시된 수치 식별 코드는 기만적 표시 예외로 인정됨
행정 및 운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Recycle은 관련 규정 정비, 수거·선별 정보 수집, 물질 특성 조사 실시 및 공표를 담당함 - 특성 조사는 5년마다 갱신되며, 결과는 재활용 가능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각 물질 특성 조사에 대해 예비 결과를 공표하고 공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과를 확정·공표함
시행 및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물질 특성 조사 공표일로부터 18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제조된 제품·포장재에는 유예 적용 - CalRecycle은 2025년 4월 4일 최종 특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실무상 재활용 표시 제한은 2026년 10월 4일 이후 제조된 제품·포장재를 기준으로 적용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연방에서는 「환경 마케팅 가이드라인」³⁾을 통해 환경 표시 기준을 제시하나, 별도 통합 강제 인증제도는 부재
 - 허위·과장 환경표시는 「연방거래위원회법」⁴⁾에 따라 사후 규제
- (도입동향) 캘리포니아주는 「공공자원법」⁵⁾ 개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성 표시를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와 연계하는 규제 도입
 - 제품·포장재가 실제 재활용 인프라에서 수거·선별·재활용되는 경우에만 재활용 표시 허용
 - 기준 미충족 시 다음은 기만적 표시로 간주될 수 있음
 - ‘recyclable’ 문구, 추적 화살표 기호(chasing arrows),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화살표 기호 등 재활용 가능성 표시
 -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의 수지 식별 코드는 별도 표시 의무이며, 화살표 없는 단순 삼각형 내부 표시는 재활용 가능성 표시와 구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캘리포니아 안전식수 및 독성물질 집행법」⁶⁾ 등을 통해 유해물질 표시 규제도 병행
 - 캘리포니아주는 추적 화살표 기호를 단순 재질 표시가 아닌 재활용 가능성 주장으로 해석하여 제한

3)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4)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

5) Public Resources Code, State of California

6)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Proposition 65)

2

중국

- (현행 규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⁷⁾ 및 「순환경제촉진법」⁸⁾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및 포장재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 일부 제품은 국가표준(GB)에 따라 표시 및 환경 요구사항 적용
- (도입동향) ‘이중탄소 정책’⁹⁾에 따라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규제 강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전자상거래 및 택배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포장재 사용 및 친환경 표시 기준 확대 흐름

3

일본

- (현행 규정) 「용기포장재 재활용법」¹⁰⁾에 따라 재질 식별 및 분리배출을 위한 법정 식별표시(identification mark) 적용
 - 플라스틱 용기·포장에는 재질 식별 및 분리배출 안내를 위한 ‘플라 마크(Pla-mark)’ 등 별도의 식별표시 사용
- (도입동향)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¹¹⁾ 시행에 따라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 고려 강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에코마크를 통한 자율적 환경라벨 인증 제도 운영

7)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8)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9) 碳达峰与碳中和

10)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11)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4 EU

- (현행 규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¹²⁾ 및 「REACH 규정」¹³⁾을 통해 포장 및 화학물질 관리
 - 환경 표시 관련 허위·기만 행위는 「불공정 상업행위 지침」¹⁴⁾에 따라 규제
- (도입동향)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¹⁵⁾ 제정으로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성 및 라벨링 요구 강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 에코라벨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한 제품 환경 정보 공개 및 추적성 강화

5 인도

- (현행 규정)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칙」¹⁶⁾ 및 EPR 체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 규제를 운영
 - 생산자·수입자 및 브랜드소유자(PIBOs)에 대한 EPR 이행 책임이 부과되며, 관련 등록·보고 체계가 중앙집중식 포털로 운영
- (도입동향)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 EPR 포털을 통해 등록, 추적 및 의무 이행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포장 표시·라벨링 요구도 점차 정교화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표시·라벨링 및 EPR 이행 관리를 결합한 운영이 강화되는 흐름

12)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3) Regulation (EC)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14) Directive 2005/29/EC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15)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6)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 2016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상위 법프레임	연방거래위원회법 및 주별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순환경제촉진법 및 국가표준 체계	용기포장재 재활용법 및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및 REACH 규정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 및 EPR 체계
주요 규제부처	연방거래위원회 등	생태환경부	환경성, 경제산업성 등	유럽집행위원회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중앙오염통제위원회
규제 방식	사후 규제 중심, 주 단위 표시 제한 규제 강화	국가표준 기반 사전 규제 중심	식별표시 및 분리배출 안내 중심	사전·사후 혼합 규제	EPR·표시·라벨링 관리 병행
환경·유해 물질	Proposition 65 등 주 단위 규제	국가표준 및 목록 기반 유해물질 관리	일부 유해물질 규제 및 관리체계 존재	REACH 규정을 통한 통합 화학물질 관리	플라스틱 폐기물·재활용 중심 관리
포장·라벨	재활용 가능성 표시 제한 (SB 343 기반)	포장 회수 표시 및 국가표준 기반 표시체계	재질 식별 및 분리배출 표시 의무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구 강화	플라스틱 포장 표시·라벨링 및 EPR 관리 강화
적합성 평가	별도 통합 인증 체계 없음	일부 제품 대상 강제 인증(CCC)	법정 인증 체계 없음	일부 제품 CE 마킹 요구	등록·EPR 이행 관리 중심
인증마크	별도 환경 인증 없음	CCC 인증 등 국가 인증 존재	에코마크	CE 마크, EU Ecolabel	EPR 이행 체계 중심
수입자 책임	주법 기반 표시 책임 부과	중국 내 책임자 지정 의무	표시 책임 중심	EU 내 책임자 지정 의무	EPR 등록 및 이행 책임 구조
사후관리	FTC 및 주정부 단속	시장감독총국(SAMR) 중심 감독	행정지도 중심 관리	시장감시 체계 운영	CPCB 및 주정부 관리
규제 특징	추적 화살표 기호를 실제 재활용 가능성과 직접 연계해 제한	포장 회수분류 표시 중심	재질 식별·분리배출 중심	조화된 포장 라벨링·지속가능성 체계 구축	플라스틱 포장 관리와 EPR 결합
실무 리스크	글로벌 공용 포장의 추적 화살표 기호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재활용 가능성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별도 라벨·포장 운영 부담 발생 가능	포장 회수 표시 및 국가표준 준수 필요	일본식 식별표시 준수 필요	회원국별·EU 공통 표시 요구 병행 검토 필요	표시·EPR 등록 및 관리 부담 가능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플라스틱 제품 환경 라벨링에 관한 법률, 상원 법안 567호 제정(2011년) 및 기타 - 수정안 - (허위 재활용 가능성 표시에 관한) 상원 법안 343호 제정(2021년)
관리기관	캘리포니아 주 의회 (California Legislature)
법적근거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제17580.5조, 「공공자원법」 제18015조, 제42355.5조, 제42355.51조
통보문서	-
주요목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관련 허위·오인 표시 방지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처리 정보 제공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재활용 표시 제한	제품·포장재가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 미충족 시 'recyclable'로 표시, 추적 화살표 기호 등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재활용성 판단 기준	주 인구 60% 이상을 포괄하는 관할구역의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수거되고, 주 전체 재활용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선별·처리된 후, 바젤협약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시설로 이송되어 실제로 재활용되고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어야 함
기록보관 의무	'recyclable' 용어, 추적 화살표 기호, 재활용 유도 표시 사용 시 관련 근거 자료 서면 보관 필요
수지 식별 코드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의 수지 식별 코드는 별도 표시 의무가 있으나, 기준 미충족 시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표시할 수 없음
설계·물질 요건	재활용을 방해하는 잉크·접착제·라벨 제한, PFAS 함유 기준 등 추가 요건 존재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소비자 오인 방지와 정확한 재활용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 측면에서 정책적 정당성 존재
비차별성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유통·수입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식적 비차별성은 인정 가능
최소무역제한성	인증·허가 제도는 없으나, 캘리포니아 전용 라벨·포장 설계 필요성이 생길 수 있어 실질 부담 발생 가능
투명성	법문, FAQ, 특성 조사 결과, 업데이트 자료 등이 공개되어 있음

○ 결론 및 권고사항

- (결론) 인증·시험 요구 제도는 아니나, 재활용 표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제품 포장·마케팅·정보관리에 영향 가능
 - 추적 화살표 기호, ‘recyclable’ 문구, 수지 식별 코드 표시 방식에 따라 포장재 실무 부담 가능
- (권고사항) ①CalRecycle 특성 조사 결과 및 업데이트 자료의 지속 모니터링, ②캘리포니아 내 판매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표시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③재활용 표시 유지가 어려운 제품군에 대한 보수적 라벨 전략 검토, ④공급망 단계에서의 PFAS 및 재활용 저해 요소 관련 자료 확보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제는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소비자 보호 목적 표시 규제로서,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인증·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재활용 가능 여부가 주 재활용 인프라 및 CalRecycle 특성 조사 기준이기에, 기업의 포장·표시 전략 조정 부담 가능
- 특성 조사 공표 및 18개월 유예를 거쳐, 실제 적용 시점(2026.10.04.)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예정
- 법률, 특성 조사 결과, 유예 구조 등은 공개되어 투명성은 확보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일부 우려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일부 우려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보수적 라벨 전략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① 캘리포니아 내 판매·유통 제품에 대한 추적 화살표 기호, 'recyclable' 문구 사용 여부 우선 점검 ② 기준 충족 여부가 불명확 시 해당 표시를 보수적으로 삭제·수정 ③ 수입자·바이어와 협업하여 캘리포니아 판매분 전용 라벨 운영 여부 검토
중견 기업	제품군별 이원화 및 문서관리 체계 구축	① 제품군별로 재활용 표시 유지 가능 여부 구분 관리 ② 경질 플라스틱 병·용기의 수지 식별 코드 표시 방식 점검 및 필요 시 금형 수정 계획 수립 ③ 공급업체로부터 PFAS 및 포장재 구성 정보 확보, 내부 기록보관 체계 정비
대기업	공급망·설계 단계 내재화 및 선제적 포장 전환	① 글로벌 포장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저해 요소 최소화 기준을 반영 ② CalRecycle 특성 조사 및 업데이트 자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단일 소재화, 재활용 용이 설계,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용 내부 가이드라인 운영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참고자료

연번	국문명	영문명
1	연방거래위원회 환경 마케팅 가이드라인	FTC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
2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3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직업법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4	캘리포니아주 공공자원법	California Public Resources Code
5	플라스틱 재활용 설계 가이드라인(APR)	APR Design Guide for Plastics Recyclability
6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복구부 물질 특성 연구	CalRecycle Material Characterization Study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법안 제343호
제507장**

환경광고와 관련하여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80조 및 제17580.5조를 개정하고,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8015조 및 제42355.5조를 개정하며, 제42355.51조를 신설하는 법률

[2021년 10월 5일 주지사 승인. 2021년 10월 5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됨.]

입법자문요약

SB 343, Allen. 환경광고: 재활용 표시: 재활용 가능성: 제품 및 포장재.

(1) 현행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환경마케팅 주장은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마케팅 주장은 통일되고 인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 공공정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본 법안은 이에 더하여,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은 진실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사용 종료 시점(end of life)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주의 공공정책임을 선언한다.

본 법안은, 대중에게 제품 또는 포장재가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및 새로운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자원재활용복구부가 특정 규정을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 등 각종 사업장 및 시설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및 시설에서 수집되거나 처리된 물질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물질 유형 및 형태가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의해 적극적으로 회수되며 오염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관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도록 한다. 본 법안은 또한, 부서가 조사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고품폐기물 시설에서 수집, 선별, 판매 또는 이전되는 물질 유형 및 형태에 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본 법안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게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재활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이고, 그

프로그램들이 합쳐서 주 인구의 최소 60퍼센트를 포괄하는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90

(2) 현행법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마케팅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본 법안은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포장재를 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법안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또는 포장재가 추적 화살표 기호를 비롯한 기호, 문구 또는 지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규정된 바에 따라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가 아닌 한, 이를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기존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가 요구하는 지방 프로그램을 부과하게 된다.

(3) 현행법상,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환경 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그 소비재가 자연환경에 해롭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유익하다고 광고, 라벨 또는 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특정 정보 및 문서를 기록으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recyclable'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여러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 가이드라인(Federal Trade Commission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에 포함된 통일된 기준에 그 소비재가 부합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이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본 법안은, 정의된 바에 따른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표시를 하는 자에게도 그 기록보관 요건을 적용한다. 본 법안은 'recyclable'이라는 용어의 사용, 추적 화살표 기호의 사용, 또는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기타 표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및 문서에 그 소비재가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한다. 본 법안은, 소비재가 열거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의 적용을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소비재의 유효수명 종료 시 적절히 폐기하거나 그 밖에 적절히 처리하도록 정확히 지시하는 것은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본 법안은 또한,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퇴비화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가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고, 주가 요구하는 지방 프로그램을 부과하게 된다.

(4) 현행법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 대하여, 삼각형과 관련하여 특정 숫자와 문자를 배치하여 그 병 또는 용기의 제조에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본 법안은 해당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주 전체 재활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지 식별 코드를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캘리포니아 헌법은 주가 요구하는 특정 비용에 대하여 지방기관 및 학교구에 보상할 것을 주에 요구한다. 법률 조항은 그 보상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 법안은 특정 사유에 따라 이 법에 대하여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캘리포니아 주 국민은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조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80조

(a)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광고나 소비재의 라벨 또는 용기에, "environmental choice", "ecologically friendly", "earth friendly", "environmentally friendly", "ecologically sound", "environmentally sound", "environmentally safe", "ecologically safe", "environmentally lite", "green product"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소비재가 자연환경에 해롭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유익하다고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에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가 그 표시가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

(2) 그 소비재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불리한 환경영향.

(3) 그 소비재의 생산, 유통 및 폐기와 직접 관련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자가 취한 조치.

(4) 그 소비재의 생산 또는 유통과 직접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허가의 위반 사항.

(5) 해당되는 경우, 그 소비재가 "recycled", 'recyclable', "biodegradable", "photodegradable" 또는 "ozone friendly"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6) 해당 자가 'recycl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소비재가 「공공자원법」 제42355.51조 (d)항에 따른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b) 본 조에 따라 유지되는 정보 및 문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대중의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c) 본 조의 목적상, 광고를 하거나 포장에 해당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그 표시를 시작하지 않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러한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0

Ch. 507? 3 ?

(d) 입법부의 의도는, 본 조에 따라 유지되는 표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정보 및

문서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중에게 전면 공개되도록 하는 데 있다.

(e) 본 조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적 화살표 기호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5조 또는 「공공자원법」 제42355.51조에 따라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해당 소비재가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추적 화살표 기호를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여기에는 연방의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제103(b)(1)조(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322(b)(1)조) 및 「보건 및 안전법」 제25215.65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 해당 소비재가 「캘리포니아 음료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법」(「공공자원법」 제1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12.1편)의 적용을 받는 음료용기인 경우.

(f) 본 조의 목적상, “추적 화살표 기호”란 각 화살표의 중간 부분이 굽어 있고 시계 방향의 경로를 나타내며, 각 화살표의 꼭짓점과 인접한 화살표의 밑부분 사이에 짧은 간격이 있는 세 개의 화살표로 이루어진 정삼각형을 말한다. “추적 화살표 기호”에는 소비자가 이를 재활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그 기호의 변형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화살표가 원형 패턴으로 배열되거나 지구 둘레에 배치된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g) 본 조의 목적상,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소비재의 유효수명 종료 시 이를 적절히 폐기하거나 그 밖에 적절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a)항에 따른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해당 소비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경우.

(A) 카펫 제품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와 관련된 「공공자원법」 제42970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20장.

(B) 중고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법(「공공자원법」 제42985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21장).

(C)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법(「공공자원법」 제42860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17장).

(D) 2003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법(「공공자원법」 제42460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8.5장).

(E) 전자폐기물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214.9조부터 시작하는 제10.3절.

(F) 2006년 충전식 배터리 재활용법(「공공자원법」 제42451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8.4장).

(G) 2004년 휴대전화 재활용법(「공공자원법」 제42490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3부 제8.6장).

? 4 ?Ch. 507

(H) 「공공자원법」 제48700조부터 시작하는 제30편 제7부 제5장에 따라 수립된 건축용 도료 회수 프로그램.

(I) 2008년 수은 온도조절기 수거법(「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214.8.10조부터 시작하는 제10.2.2절).

(J) 2016년 납산 배터리 재활용법(「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215조부터 시작하는 제10.5절).

(2) 소비자에 대한 지시가, 제(1)호에서 확인된 프로그램이 해당 소비재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재를 폐기하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히 지시하는 경우.

(h) 본 조의 목적상,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퇴비화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a)항에 따른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조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80.5조

(a)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마케팅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본 조의 목적상, “환경마케팅 주장”에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발간한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에 포함된 모든 주장이 포함된다.

(b)

(1) 본 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불복신청에 대하여, 해당 자의 환경마케팅 주장이 연방거래위원회가 발간한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에 포함된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예시와 일치한다는 것은 항변 사유가 된다.

(2)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공공자원법」 제18015조 (d)항 위반 주장.

(B) 「공공자원법」 제42355.51조 (b)항 제(1)호 위반 주장.

제3조

「공공자원법」 제180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15조

(a)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질 플라스틱 병 및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는 그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에 사용된 수지를 나타내는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벨 및 바닥 컵(basecup)이 서로 다른 재질로 된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그 기본 재질에 따라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코드는 삼각형 내부에 배치된 숫자와 삼각형 아래에 배치된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다.

1 = PETE (polyethylene terephthalate)

2 =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3 = V (vinyl)

4 =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5 = PP (polypropylene)

90

Ch. 507? 5 ?

6 = PS (polystyrene)

7 = OTHER (includes multilayer)

(b) 병 또는 용기가 그 수지의 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수지 약호 아래에 "7"이 표시되어야 한다.

(c) 자원재활용복구부의 재활용국(Division of Recycling)은 (a)항에 따라 라벨에 사용되는 약호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d)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지 식별 코드는, 해당 경질 플라스틱 병 또는 경질 플라스틱 용기가 제42355.51조 (d)항에 규정된 주 전체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f)항에 정의된 추적 화살표 기호 내부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공자원법」 제4235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55.5조

(a) 입법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환경마케팅 주장은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마케팅 주장은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가 정한 표준 규격을 포함하여 통일되고 인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 공공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 입법부는 이에 더하여,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은 실제 운용상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사용 종료 시점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주의 공공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제5조

「공공자원법」에 제42355.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355.51조

(a) 누구든지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포장재를 주 내에서 판매 제의, 판매, 유통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b)

(1) 제(2)호를 전제로,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밖의 기호나 문구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제품 또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제품 또는 포장재는,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d)항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가 아닌 한, 본 조 및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5조에 따라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간주된다.

(2)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d)항 제(1)호 (B)목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의 물질 특성조사를 부서가 게시한 날로부터 18개월까지, 또는 2024년 1월 1일까지 중 더 늦은 날까지 제조된 모든 제품 또는 포장재.

(B) (d)항 제(1)호 (B)목에 따라 부서가 물질 특성조사를 갱신한 날로부터 18개월까지 제조된 모든 제품 또는 포장재로서, 갱신된 조사 게시 이전에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가, 또는 신규 제품 또는 포장재의 경우 게시 이전이었다면, (d)항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하였을 것이었던 경우.

(3) 제(2)호를 전제로, (d)항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이 모두 적용된다.

(A) 제품 자체에 직접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그 제품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밖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본 조 및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5조에 따라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제품 또는 포장재가 둘 이상의 재질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구는, (d)항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포장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문구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다른 구성요소 중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같은 글꼴, 같거나 더 큰 글자 크기, 또는 같거나 더 큰 기호 크기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C) 소비 가능한 제품(consumable product)을 포함하는 포장에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밖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본 조의 목적상 포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목의 목적상, “소비 가능한 제품”이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도록 의도된 상품을 의미한다.

(c) 본 조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어느 것도 본 조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5조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해당 물품이 재활용 가능하지 않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추적 화살표 기호 위에 45도 각도로 놓인 명확히 보이는 선을 함께 사용하여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2) 연방법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추적 화살표 기호를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소비재. 여기에는 연방의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제103(b)(1)조(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322(b)(1)조) 및 「보건 및

안전법」 제25215.65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3)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재를 퇴비화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시하는 것.

(4) 꼭 찬 정삼각형(solid equilateral triangle) 내부에 배치된 수지 식별 코드.

(d)

(1) 2024년 1월 1일까지, 제(2)호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재가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및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통상 전환되는 재질 유형 및 형태인지 여부를 대중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는 다음 각 목의 두 가지를 모두 하여야 한다.

(A)

(i) 제41821.5조에 따라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41821.5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갱신한다.

(I) 해당 사업장 및 시설에서 수집되거나 처리된 물질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II) 어떠한 물질 유형 및 형태가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의해 적극적으로 회수되며 오염물로 간주되지 않는지.

(ii) 부서는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형식으로, 제41821.5조 (b)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게, (i)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B)

(i) 주 내 재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는 조사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고 부서가 판단한 고품폐기물 시설에서 수집, 선별, 판매 또는 이전되는 물질 유형 및 형태에 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목에 따른 부서의 활동에는 조사에 포함할 적절한 시설을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ii) 부서는 본 목에 따라 요구되는 물질 특성조사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첫 번째 갱신은 2027년에 이루어져야 한다.

(iii) (i)목 및 (ii)목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가장 최근의 정기적 물질 특성조사 시점에는 ??????하지 않았던 추가 정보를, 물질 유형 및 형태의 적절한 특성 파악과 관련하여 게시할 수 있다.

(iv) 주 내 물질 유형 및 형태의 대표 표본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서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설은 상호 합의한 날짜와 시간에 부서가 지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기 표본채취를 허용하여야 한다. 부서는 그 시설이 이전 24개월 동안 표본채취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 표본채취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v) 본 목에 따라 실시되는 각 물질 특성조사에 대하여, 부서는 조사의 예비 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예비 결과를 설명하고 공중의 의견을 받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공개회의는 부서가 예비 결과를 게시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공중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고려한 후, 부서는 공개회의 후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3)호를 전제로, 제품 또는 포장재는 제(1)호 (B)목에 따라 부서가 게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제품 또는 포장재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질 유형 및 형태인 경우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그 재질 유형 및 형태가, 합쳐서 주 인구의 최소 60퍼센트를 포괄하는 관할구역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의해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될 것.

(B)

(i) 그 재질 유형 및 형태가, 제43020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정의된 대용량 이송 또는 처리시설(large volume transfer or processing facilities)에 의해 재활용 공정을 위한 정의된 흐름(defined streams)으로 선별되고, 그러한 시설들이 처리하는 물질에 관하여 주 전역 재활용 프로그램의 최소 60퍼센트에 집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정의된 흐름이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요건에 부합하는 재생시설(reclaiming facility)로 보내져 회수될 것.

(ii) 부서는 본 조의 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요건을 대용량 이송 또는 처리시설 이외의 이송 또는 처리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3) 적용 가능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재는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그 플라스틱 포장재는 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가 발간한 APR Design® Guide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또는 라벨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플라스틱 제품 및 비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의 경우, 그 제품 또는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성요소, 잉크, 접착제 또는 라벨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제품 또는 포장재는 제42370.2조 (g)항 제(4)호를 이행하는 규정에 따라 식별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제품 또는 포장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FAS, 즉 과불화알킬 또는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fluoroalkyl or polyfluoroalkyl substances)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또는 섬유로 제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제조자가 제품 또는 포장재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였고 그 제품 또는 포장재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의 PFAS 성분 및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첨가 화학물질의 의도적 분해산물인 PFAS가 포함된다.

(ii) 총유기불소(total organic flourine)로 측정하였을 때 제품 또는 제품 구성요소 또는 포장재 또는 포장재 구성요소에 100ppm 이상 존재하는 PFAS의 존재.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포장재는 최소 75퍼센트의 입증된 재활용률을 가지는 경우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 내에서 선별되고

집적된 그 제품 또는 포장재의 75퍼센트 이상이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재로 재가공된다는 뜻이다.

(5)

(A) 2030년 1월 1일 이전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석 수거 프로그램(curbside collection program)에 따라 수거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재라도, 비연석 수거 프로그램(non-curbside collection program)이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최소 60퍼센트를 회수하고, 그 물질이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될 충분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유효수명 종료 시 이송, 처리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어 재질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정의된 흐름으로 선별·집적될 수 있는 경우,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다.

(B)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석 수거 프로그램에 따라 수거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재라도, 비연석 수거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최소 75퍼센트를 회수하고, 그 물질이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될 충분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유효수명 종료 시 이송, 처리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어 재질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정의된 흐름으로 선별·집적될 수 있는 경우,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다.

(6)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포장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수립된,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또는 폐기를 규율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그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고, 또한 국장(director)이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가 연석 재활용(curbside recycling)의 오염을 증가시키거나 그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는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다.

(7) 제(1)호에 따라 부서가 게시한 정보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기관이 특정 재질 유형 또는 형태를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수용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를 결정할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 본 조의 목적상, "추적 화살표 기호"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80조 (f)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f) 제40051조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 위계(waste hierarchy) 및 제40180조에 따라, 본 조의 목적상 "recycling", 'recyclable', 및 "recyclability"에는 제40201조에 정의된 transformation, EMSW conversion 또는 연료 생산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편 제6조에 따라 이 법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방기관 또는 학교구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 이 법이 정부법전 제17556조의 의미 내에서 새로운 범죄 또는 위반행위를 창설하거나, 범죄 또는 위반행위를 폐지하거나, 범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변경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편 제6조의 의미 내에서 범죄의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